

파주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8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8. 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제 안 이 유

- 지방조직 개편계획중 읍면동은 2002년까지 「주민자치센터」로서 그 기능이 대폭 축소될 예정이며 1단계로 부읍면장제와 동사무장제가 폐지됨
- 따라서 읍면동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 위해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중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사무의 일부를 본청에서 통합관리하고자 함.

☐ 주 요 골 자

- 읍면동에 위임된 세무과소관 다음의 사무를 본청(세무과)으로 흡수
가. 시세의 수납업무
나. 체납자 독촉업무
다. 가산금의 수납업무

파주시사무의읍·면·동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사무의읍·면·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(별표)중 세무과 소관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세무과 소관

일련 번호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규	수임기관
1	○ 시세부과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	① 고지서 교부 ② 체납세 징수독려	지방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8조	읍·면·동
2	○ 시세완납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 미과세 증명의 발급		동법 제39조	읍·면·동
3	○ 시세자진신고납부 에 따른 납부서 교부		동법 제3조 동법 제4조	읍·면·동